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. . .

제 출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제척·기피·회피 절차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, 법률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(제척·기피·회피) 규정 신설(제8조의2)
- 나. 법률용어 정비 (제8조, 제14조 등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
- (1)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
- (2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제출 없음
 - 평창군 공고 제2014-121호
 - 공고기간 : 2014. 2. 7 ~ 2014. 2. 27(21일)
- 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(기획감사실-1222, 2014.2.5)
 - *원안 외 행정용어 정비 권고
- (4) 사전규제검토 : 해당사항 없음 (기획감사실-1229, 2014.2.5)
- (5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「국민체육 진흥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국민체육 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그 회무”를 “협의회사무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발의에 의하여”를 “요구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발생한 때”를 “발생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부적합하다”를 “적합하지 않다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”를 “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의 수입금

제13조제2항 중 “이율이 높은 예금으로”를 “이자율이 높은 예금에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

제14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기금운용계획서와 이 조”를 “기금운용계획서와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 「평창군재무회계규칙」 ”을 “ 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 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설치) 「<u>국민체육진흥법</u>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4조(구성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 2. 위촉직 : 군의회 의장이 추천 하는 군의회 의원 1명과 기타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인 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5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 5. 기타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등</p> <p>제6조(의장의 직무 등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<u>그 회무를</u> 총괄한다.</p>	<p>제3조(설치) 「<u>국민체육진흥법</u>」 제5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그</u> <u>밖에</u> ----- ----- 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제6조(의장의 직무 등) ① ----- ----- <u>협회의</u> <u>사무</u>-----.</p>

② (생략)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·② (생략)

③ 의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제1항-----
-----.

제8조(회의) ① -----

----- 요구에 따라 -----
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

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기금의 설치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·운용한다.

제12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하며,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. 다만,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2. (생략)
3. 기타 수입금

제9조(위원의 해촉) -----

----- 발생한 경우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--- 적합하지 않다-----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-----

----- 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-----
-----.

제11조(기금의 설치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-----

-----.

제12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(생략)

제13조(기금의 관리) ① (생략)

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.

제14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(생략)
2.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
3. (생략)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5조(기금의 사용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.

1. ~ 5. (생략)
6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

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이자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7조(결산 및 보고) ①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기금의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-----.

제14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
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-----

제15조(기금의 사용) ①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-----

② -----
----- 범위-----
-----.

제17조(결산 및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
<p>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<u>기금</u> <u>운용계획서</u>와 이 조 제1항에 따 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<u>군의회에</u>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8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「<u>평창</u> <u>군재무회계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같음)</p> <p>② ----- <u>기금</u> <u>운용계획서</u>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8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「<u>평창</u> <u>군 재무회계 규칙</u>」-----.</p>
---	--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체육과장 장동기
연락처	(033) 330-2540

관계법령

□ 국민체육진흥법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